계약직 운용에 관한 규정

제정2012. 8.22개정2012.12.24시행2012.12.26개정2013. 3. 7시행2013. 6.20개정2014.12.29시행2014.12.31개정2015. 3.30시행2015. 3.31개정2017.11. 9시행2017.11.10개정2020. 7.22시행2020. 7.23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직제규정 제10조 및 보수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원의 임 용,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"일반계약직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
 - 1. 공사 업무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책임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 - 2. 신규 사업 또는 계속사업의 수행 결과가 대고객, 이해관계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 사업의 안정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 - ②"연구전문직"이라 함은 학문적 또는 전문적 지식의 제공을 통해 공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 연구전문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"연구위원"과 "전문위원"으로 구분한

다.

- 1. "연구위원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박사과 정 수료이상의 학문적 전문지식과 자격요건을 가지고 당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
- 가. 광고관련 연구
- 나. 광고산업지원 연구
- 다.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
- 2. "전문위원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또는 학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을 바탕으로 상담 또는 자문에 응하거나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
- 가. 광고영업의 기획에 관한 업무
- 나. 공익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
- 다. 뉴미디어관련 첨단 산업 분야에 관한 업무
- 라. 재무, 회계, 법무 등 해당영역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
- 마. 기타 공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특수 업무
- ③"단시간근로 계약직"이라함은 복무규정 제13조에 의거 유연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단시간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
- ④ "개방형 계약직"이라 함은 사장이 정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 나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사 내·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

요가 있는 팀장급 이상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20.7.22>

제3조(정원) 계약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.

- 제4조(임용) ①계약직은 사장이 임용하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. <개정 2015.3.30>
 - ②사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 - ③뉴미디어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또는 변호사, 회계사 등 해당 영역의 전문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각 항 경력년수의 1/2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이 인정되면 그 분야의 임용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12.24>

<개정 2013.3.7.>

- ④개방형 계약직 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당해 개방형 직위의 직무 내용·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<신설 2020.7.22>
- ⑤계약직의 임용상 결격사유, 임용시의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.<이동 2020.7.22>
- ⑥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. 단, 개방형 계약직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5.3.30><개정 2020.7.22>

- 제4조의2(채용 및 전형방법) ①계약직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4.12.29>
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4.12.29> <개정 2015.3.30>
 - 1. 임용 예정직의 업무수행에 특정 자격증 또는 특정 학위가 필요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
 - 2. 특정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12.29> <개정 2015.3.30>
 - ④제1항의 공개채용과 제2항의 경력경쟁채용의 전형방법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14.12.29> <개정 2015.3.30.>
 - ⑤개방형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내·외부 대상 공개모집 후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. 이때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0.7.22>
- 제5조(평가) ①계약직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보수, 임용 등에 차별을 둘 수 있다.
 - ②계약직에 대한 평가 결과, 일정기준 이상 자는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5.3.30>
- ③계약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 제6조(해임) 사장은 계약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

임할 수 있다.

- 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
- 2. 규정 또는 업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
- 3.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
- 4. 업무이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
- 5.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
- 6. 기타 임용 사유가 소멸된 때

제7조(보수) ①계약직은 연봉제를 적용한다.

- ②일반계약직의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초임기본연봉은 임용 시 부여된 직위를 고려하여 보수규정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정한다.
- ③연구전문직 중 연구위원의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, 책임연구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책임연구위원 가급을 지급한다. 초임 기본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4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정한다. <개정 2013.6.18>
- ④개방형 계약직 및 연구전문직 중 전문위원의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초임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, 학력 및 담당업무를 감안하여 별표 1의 등급을 정한 후, 업무중요성및 난이도, 개인적인 능력,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등급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정한

다.<개정 2020.7.22>

- ⑤연구위원, 전문위원의 연봉 한계액은 각각 별표 2,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12.12.24> <개정 2013.6.18.> <개정 2017.11.9>
- ⑥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27조에 정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.
- ⑦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3장에서 정한 연봉외 급여를 지급한다.
- 제8조(자녀학비보조금) 계약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학 비보조금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퇴직금) 1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4장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.
- 제10조(외부출강 등) ①사장은 계약직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외부출강을 허용할 수 있다
 - ②제2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의 인사 중에서 사장이 객원 연구위원을 위촉, 활용할 수 있다.
 - ③객원연구위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0조의2(여비지급) ①계약직원의 국내외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여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<개정 2020.7.22>
 - 1. 일반계약직 : 3을이하 직원 여비 상당액

- 2. 연구전문직 : 2급 직원 여비 상당액
- 3. 개방형 계약직 : 2급 직원 여비 상당액

[본조 신설 2015.3.30]

- 제11조(연구자문위원회) ①사장은 연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 사안에 따라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 - ②연구자문위원 위촉 등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2조(정년)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자는 별도의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다.
- 제13조(준용규정) 계약직 운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복무, 인사, 보수 등 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4조(적용예외) 제2조 제3항에 의거 임용되는 "단시간근로 계약직" 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2.12.24.>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3.7.>

이 규정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6.18.>

이 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12.29.>

이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3.30.>

이 규정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11.9.>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2020.7.22>

이 규정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전문위원 및 개방형 계약직의 등급별 기준 및 초임 기본연봉

(단위 : 원)

구분	자 격	초임 기본연봉
1등급	①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②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④ 대졸자는 당해분야의 경력 12년 이상, 고졸자(전문대졸 포함, 이하 같음)는 당해분야의 경력 15년 이상인 자	60,569,000
2등급	 ①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④ 대졸자는 당해분야의 경력 9년 이상, 고졸자는 당해분야의 경력 12년 이상인 자 	49,753,000
3등급	 ①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대졸자는 당해분야의 경력 6년 이상, 고졸자는 당해분야의 경력 9년 이상인 자 	41,100,000
4등급	 ① 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대졸자는 당해분야의 경력 3년 이상, 고졸자는 당해분야의 경력 6년 이상인 자 	31,077,000

(별표 2) <개정 2013.6.18>

연구위원의 기본연봉한계액표

(단위:원)

연 봉 상 한 액	94,315,000
연 봉 하 한 액	44,898,000

(별표 3) <개정 2012.12.24.> <2017.11.9.> <개정 2020.7.22>

전문위원 및 개방형 계약직의 기본연봉한계액표

(단위 : 원)

연 봉 상 한 액	94,315,000
연 봉 하 한 액	31,077,000

(별표 4) <개정 2013.6.18>

연구위원 등급별 기준, 초임 기본연봉 및 책임연구위원 가급

(단위:원)

구분	자 격	초임기본연봉
1등급	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자	66,165,000
2등급	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	54,350,000
3등급	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	44,898,000
책임연구위원 가급		2,400,000